

독도사전 (영문 full version)

- 영문핵심 독도사전 삭제



가로 家老

일본 무가의 가신 중 가장 중요한 직제. 일반적으로 에도(江戸) 시대에 번주(藩主) 아래에서 번정(藩政)을 주재하고 총괄하는 최고의 직제를 말한다. 숙로(宿老)·노중(老中)·집정(執政) 등으로도 불렸다. 대부분은 번주의 일족이나 누대(累代)의 보대중신(譜代重臣) 중에서 선발되며 인원수는 번에 따라 다르나 많게는 십수 명, 적어도 2~3명을 두었으며 합의 윤번제에 의해 번정을 집행했다. 가로는 법제적으로 정해진 관제에 의해 설치된 직제가 아니라 무가 사회의 다른 직제와 마찬가지로 관습적으로 성립되어 제도로 정착한 것으로, 이 직제가 많이 활용된 것은 무로마치(室町) 시대 중기부터이다. 센고쿠(戰國) 시대 이후, 영주가 권력을 확대하고 일족과 재지 유력자인 국인층(國人層) 등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에서 다이묘(大名)의 가령(家令)적 존재였던 가로가 공적인 정치에 관여하여 일문(一門)이나 유력한 방계[도자마(外)] 가신을 정치 무대에서 물리치고 가신단의 제일인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에도 막부(江幕府)의 직제에서 대로(大老)·노중(老中)·와카도시요리(若年寄)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로는 여러 번(藩)에서만 사용되었다. 번의 가로는 전국 다이묘(戰國大名)의 가로 제도보다 발전된 것으로 번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여러 번에서는 직제의 정비에 따라 담당 분야도 분화되어 번에 거주하는 국가로(國家老)와 에도 번저에 거주하는 에도가로(江家老)로 나누어졌다. 에도 시대 중기 이후 번정이 위기에 처하자 여러 번에서는 인재 등용의 길을 개방하여 그때까지 번주의 일족과 누대의 중신에 의해 독점되어 오던 가로직에 중·하급 번사를 임용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그들은 번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번정 개혁을 단행했다. 가로 중에는 막부가 어삼가(御三家)나 어삼경(御三卿)에, 여러 번에서는 지번(支藩)에 감독을 위해 파견한 부가로(付家老)라는 직제도 있었다.

『日本大百科全書』(小學館, 1994); 『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1979-1997); 藤野保, 『新訂幕藩體制史の究』(吉川弘文館, 1975) 〈이원우〉

관련 항목 가로일기; 노중; 다이묘

『가로일기 家老日記』

영주(領主)인 번주(藩主) 다음으로 번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가로(家老)가 매일 번의 영지(領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일지(日誌). 실제 기록은 가로의 비서격인 어장봉행(御帳奉行)들이 맡았다. 성내(城內) 가로의 집무실인 오야구라(御櫓)의 일기이기 때문에 『어로일기(御櫓日記)』라고도 부른다. 오야구라에 올라온 각종 보고는 먼저 ‘공장(控帳)’에 기록되고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거나 전사(轉寫)하여 『어국일기(御國日記)』를 따로 만들었는데, 보통 『가로일기』라고 할 경우에는 『공장』을 가리킨다.

가로는 번의 성(城)에 거주하며 영지의 행정을 총괄하는 성대가로(城代家老), 국가로(國家老), 에도의 번저(藩邸)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에도가로(江家老) 등 수 명이 임명되었는데 에도가로는 『에도가로일기』를 기록하였다. 가로에게는 번 내의 모든 정보가 보고되어 집중된다. 따라서 번의 동정을 매일 기록한 『가로일기』는 번의 행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가로 밑에 민정을 담당하는 군대(郡代)와 정봉행(町奉行), 절과 신사를 통괄하는 사사봉행(寺社奉行), 수운(水運)이나 해안 경비를 맡는 어선수(御船手) 등 다양한 부서가 각각 번의 행정을 분담했다. 또 에도, 교토 등의 번저에 파견된 어류수거(御留守居)들도 가로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들 각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특이한 일이 있으면 가로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번 내외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가로일기』에 기록된다. 『가로일기』에 기재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번주의 동정과 의식(儀式). 둘째, 번의 사무라이의 상속, 임면, 상벌. 셋째, 번의 각 부서에서의 문의와 대응 등이다.

돗토리번(鳥取藩) 『가로일기』는 현재 돗토리현립(縣立)박물관 소장 「돗토리번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오(承應) 4년(1655)부터 메이지(明治) 2년(1869)까지 에도 시대의 전 시기에 걸쳐 남아 있고, 안용복의 제1차 피랍과 2차 도일, 다케시마 도해금지 등에 관한 기록도 담겨 있다.

石上英一外, 『巖波 日本史辭典』(巖波書店, 1999); 돗토리현 공문서관 현사(縣史)소식지, 「第29回縣史だより」 2008년 9월 30일(<http://www.pref.tottori.lg.jp/dd.aspx?menuid=92629>)

〈현대송〉

관련 항목 공장;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울릉도 쟁계

가쓰 가이슈 勝海舟, 1823~1899

일본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明治) 시대의 정치가. 본명은 요시쿠니(義邦), 통칭 린타로(麟太郎)였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개명하여 야스요시(安芳)라 불렸다. 가이슈(海舟)는 호. 에도(현재의 도쿄) 출신. 에도성(江戸城)의 자잘한 수리를 담당하는 하타모토(旗本) 소보청조(小普請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서양 병학과 난학(蘭學)을 배웠다. 1855년 나가사키(長崎)에 설립된 해군전습소(海軍傳習所)에 전습생 두취(頭取)로 파견되어, 네덜란드 군인에게서 해군 기술을 배웠다. 1860년 미일수호통상조약(美日修好通商條約) 비준 사절 파견 때 간린호(咸臨丸)의 함장으로서 처음 태평양을 횡단했다. 번서조소(蕃書調所) 두취조(頭取助), 군함조련소 두취(頭取), 군함봉행병(軍艦奉行並)을 거쳐, 1864년 군함봉행(軍艦奉行)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파면당했고, 1866년 복직했다. 군함봉행 재직 시에는 고베(神戶) 해군조련소를 설치하여 근대적 해군 창설에 힘써 후세에 ‘일본 해군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 여러 번(藩)의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도바·후시미전투(鳥羽伏見戰鬪) 후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회견하여 에도성을 무혈(無血)로 개성(開城)하고, 막부군이 메이지 신정부에 저항하는 데 반대하는 등 근대 초기의 변혁기에 일본이 극심한 내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72년 해군대보(海軍大輔), 해군경(海軍卿) 등에 취임했다. 사임 후 원로원 의관(元老院議員),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을 역임하고 백작이 되었다. 저작에 『개국기원(開國起原)』, 『해군역사(海軍歷史)』, 『취진록(吹塵錄)』 등이 있다.

石井孝, 『勝海舟』(吉川弘文館, 1974); 小西四郎 編, 『勝海舟のすべて』(新人物往來社, 1985) <현대송>관련 항목 대일본국연해략도

「가에이년간 동서지구만국전도 嘉永年刊東西地球萬國全圖」

일본, 구리하라 노부아키(栗原信晁), 1848년, 105×66.2cm, 서울대 도서관 소장

프랑스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를 일본에서 입수하여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제작한 지도이다. 상단에 지도에 관한 발문이 있고 하단에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제작되었다. 지도는 채색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홍색, 유럽은 황색, 아프리카는 담홍색, 북아메리카는 청색, 남아메리카는 자색, 오스트레일리아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바다는 담청색, 극지방은 암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태평양 쪽 바다는 '대일본해'라고 적혀 있고, 동해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상태〉

「각 관찰도 거래안 各觀察道去來案」

1906년 1월 17일부터 1910년 3월 5일 사이에 각도 관찰사(各道觀察使)와 외사국(外事局) 사이에 오고 간 보고서 및 훈령을 외사국에서 모은 자료이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본은 3책 및 채색 지도로 되어 있다. 을사조약 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주로 한 침략상, 군부대의 배치 이동,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울릉도에 입항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관원의 동태에 대한 1906년 음력 3월 5일자 심흥택(沈興澤) 보고서를 담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의 보고서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허영란>

관련 항목 심흥택 보고서

「각부 청의서 존안 各部請議書存案」

1896년에서 1904년 사이에 각부(各部)에서 의정부로 보내온 모든 청의서(請議書)를 모은 것으로, 공문 원본이 아니며 의정부에서 보관용으로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체 28책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안건은 각양각색인데 앞에 제목이 붙어 있고 다음 청의서의 수문(首文), 청의서의 부속 내용이 달려 있다. 단순히 청의서만 등재된 경우도 있고, 청의서에 따라 법률안이나 규칙이 결정된 경우에는 ‘칙령 ○호’라는 식으로 그 실제 내용이 수록되었다. 편철은 청의서의 날짜순이라기보다는 왕의 재가 등 처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한 듯하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배경이 되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한 건’에 관한 1900년 10월 22일자 청의서가 제17책에 수록되어 있다. <허영란>

관련 항목 칙령 제41호

각의결정(일본) 閣議決定 Cabinet decision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내각(內閣)이 국가의 최고행정 기관이며, 내각이 의사 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각의(閣議)라고 한다.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성립된 태정관(太政官) 제도에서는 각의를 내각회의(內閣會議)라고 불렀다. 1885년 태정관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국가 운영 제도로 내각 제도가 성립되고, 1889년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면서 내각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내각관제가 공포되었다. 내각관제 제1조에 “내각은 국무 각 대신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 각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① 법률안 및 예산결산안 ② 외국 조약 및 중요한 국제 조건 ③ 관제 또는 규칙 및 법률 시행에 관계되는 칙령 ④ 성(省) 사이의 주관 권한의 쟁의 ⑤ 천황으로부터 내리거나 제국회의로부터 송치된 인민의 청원 ⑥ 예산 외의 지출 ⑦ 칙임관 및 지방 장관의 임명 및 진퇴, 그 밖에 각 성(省)의 주무 사무 중에 고등 행정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제66조 1항은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首長)인 내각 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47년 제정된 내각법 제2조 제2항은 내각 총리대신을 제외하고 국무대신의 수를 14인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3인까지 증가시켜 최대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내각회의에 첨부되는 안건은, ①일반 안건(국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으로 내각으로서 의사 결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②법률·조약의 공포 ③법률안 ④정령 ⑤의원 제출 법률안 관계 ⑥인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례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려 평균 30분 정도 진행되며, 긴급한 경우는 임시 각의가 개최된다. 임시 각의조차 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내각참사관이 각의서를 들고 각료를 찾아가 서명만 받기도 한다(회람각의).

각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의결정, 각의료해(閣議了解), 각의보고(閣議報告)로써 처리된다. 각의결정은 합의체인 내각의 의사 결정이며,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각의료해는 원래 주무 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해당 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의에 제출해 다른 국무대신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행해진다. 각의보고는 주요한 심의회(審議會)의 답신이나, 각 성청(省廳)이 작성한 백서(白書) 등을 각의에서 보여주는 경우에 행해진다. 각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따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村松岐夫, 中豊, 伊藤光利, 『日本の政治』(有斐閣, 1992); 大須賀瑞夫, 『首相官邸-今昔物語』(朝日ソノラマ, 1995)

〈현대송〉

관련 항목 내각; 일본의 영토 편집 과정; 태정관

『강계고 疆界考』 『강계고』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申景濬)이 1756년에 편찬한 한국의 역사지리서로 3권 3책으로 되어 있다. 상고 시대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국토의 강계·위치·산천·성첩(城堞)·섬 등 영토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각 사항마다 저자의 의견을 붙였다. 제1권에는 서문과 단군조선 및 기자조선, 그리고 예국·맥국·동옥저·고구려·한사군·대방군과 삼한의 강계와 국도(國都)를 논하였다. 제2권에는 신라의 국도와 축성 관계, 가야국·태봉국·후백제, 그리고 고려의 역사지리를 논하였다. 제3권에는 조선 시대를 논하였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하여 “내가 생각건대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섬은 모두 다 우산국의 땅이다(愚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蓋二島 俱是于山國也).”라는 유형원의 『여지지』 기사를 들어 기술했다. 또한 울릉도와 안용복사(安龍福事) 항목에 울릉도의 지세와 역사, 안용복의 도일 경위와 공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송병기, 『독도영유권 자료선』(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손승철〉

관련 항목 신경준; 여암전서; 유형원

「강원도 江原道」『여지고람도보 輿地攷覽圖譜』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28×24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장으로 구성된 목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목판본 지도이지만 일부 채색이 가미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와 유사하다. 산은 고을의 진산을 독립된 형태로 표현했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가 그려져 있다. 군현의 이름 옆에는 군현의 품계와 이칭, 서울로부터의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감영이 있던 원주는 성첩을 그려 강조했다. 원 지도에는 교통망이 그려져 있지 않았으나 소장자가 홍선으로 그려 넣었다. 동해안에는 경승(景勝)으로 유명한 관동팔경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상단에 인구와 토지, 주요 지역 연혁이 수록되어 있는데, 울릉도 연혁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는 남북으로 길쭉하게, 우산도는 동서로 길쭉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람도』와는 달리 울릉도의 남쪽에 우산도를 표시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여지도 輿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후반, 59.6×74.5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에 속하는 사본으로 팔도분도 중에서 강원도 부분이다. 산계(山系)의 표현은 연맥을 강조하여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을 강조하였다. 하계망은 남한강, 북한강을 비롯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도 그려져 있다. 역보(驛堡)·봉수(烽燧)·산성(山城)·누정(樓亭)·진도(津渡)·창고(倉庫)·제언(堤堰)·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교통로는 홍선으로 그렸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간산도(杆山島)'로 표기되어 울릉도의 동북쪽에 그려져 있다. 울릉도에는 죽전(竹田)과 주토굴(朱土窟)의 표시가 전혀 없다. 울릉도 옆에는 “울진에서 바람이 좋으면 2일이면 도착한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북쪽의 간성(杆城) 옆에 죽도(竹島)가 그려져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와는 무관한 섬이다. 삼척영장이 주재하던 삼척포는 섬으로 그려져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여지도 輿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70년, 37.4×3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한 도별 지도첩에 포함된 강원도 지도이다. 『동람도』형 도별도(道別圖)는 대부분 민간에서 제작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울릉도와 우산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지도』 중 「강원도」 지도의 울릉도는 ‘鬱’ 자의 속자인 ‘’ 자로 간략하게 표시했으며, 울릉도(陵島) 아랫 부분에 독도를 그리고 ‘자산(子山)’이라 표기했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 독도의 이름은 우산도(于山島) 외에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평산도(平山島)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는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우산도의 ‘우(于)’ 자를 글자 형태가 유사한 글자, 즉 ‘천(千)’, ‘간(干)’, ‘자(子)’, ‘방(方)’ 등의 글자로 잘못 전사(傳寫)한 데서 온 것이다. 민간에서 유행한 소형의 소축척 지도에 두 섬이 항상 그려진 것은 두 섬을 떼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양보경,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북방사논총』(2005)

〈양보경〉

「강원도 江原道」『지도 地圖』「강원도」『지도』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28.8×35.5cm, 영남대 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목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과 수파묘(水波描)가 없는 점 등은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동람도』보다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지명의 표시도 ‘자산도(子山島)’로 『동람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러 차례 전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지도 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45.8×66.6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의 도별 지도와 만주의 오라영고탑(烏喇寧古塔) 지도가 수록된 지도책의 강원도 지도이다. 채색 필사본 지도로 산지는 회화적 기법을 가미하면서 전통적인 연맥식(連脈式) 방법으로 표현했다.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동람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천하도 天下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17.6×29.8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 「중국도」, 「팔도총도」, 「일본도」, 「류큐국도」와 조선팔도의 도별도 등 총 13장으로 구성된 목판본 『여지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의 것과 유사하다. 감영이 있던 원주는 성첩을 그려 강조하였고 찰방역과 첨사진, 만호진은 직사각형에 표시되어 있다. 삼척첨(三陟僉)은 삼척 첨사진(僉使鎭)을, 월송호(越松戶)는 월송 만호진(萬戶鎭)을 가리킨다.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 아래쪽에 울릉도보다 작게 그려져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팔도지도 八道地圖』

한국, 황윤석(黃胤錫), 1790년, 61×100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에 속하는 사본으로 팔도분도 중에서 강원도 부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에 지명만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에는 죽전(竹田)과 주토굴(朱土窟)이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 아래에는 “울진현에서 바람을 만나면 2일 만에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는데, 평해나 삼척에서는 순풍을 만나면 하루하고 만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팔도지도 八道地圖』

한국, 작자 미상, 19세기, 58.1×69.3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으로 팔도분도 중에서 강원도 부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옆에 여백이 없어서 제 위치에 그려 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에는 죽전(竹田)과 주토굴(朱土窟)이 표시되어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한국, 작자 미상, 19세기 전반, 56.5×57.5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도 한 장에 강원도 각 지역 간의 이정표를 같이 그렸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다. 각 군현 간의 도로는 비교적 자세히 그렸으며 봉수대(烽燧臺)도 자세히 표시했다. 신라 때 울릉도를 점령한 사실과 울릉도의 크기, 촌락의 흔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1440년(세종 22)에 남호(南顙)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살고 있던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쇄환한 사실을 적고 그때부터 울릉도가 빈 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를 크게 그리고 그 동쪽에 우산도를 그렸으며, 북쪽 상단에 죽도를 표시하였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상태〉

「강원도 江原道」『해동전도 海東全圖』「강원도」『해동전도』

한국, 작자 미상, 19세기 중반, 43×31.2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에 속하는 채색 필사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남한강, 북한강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하천까지 그려져 있다. 교통로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강릉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동해안의 삼척포와 월송포는 군사 기지가 있던 곳인데 섬처럼 그려져 있다.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 있다. 울릉도에는 붉은색 흙을 채취했던 주토굴(朱土窟)과 죽전(竹田)이 표시되어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해동총도 海東總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32.5×42.2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 전도와 도별도 등 총 9장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첩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동람도』와 달리 도로망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안의 명승인 관동팔경이 표시되어 있는데, 총석정이 있는 해안의 주상절리를 민화풍으로 그렸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 서쪽으로는 삼척포가 마치 섬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의 지도에서 삼척포가 바닷가에 표시되어 있어서 섬으로 오인하고 그린 것이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동국지도 東國地圖』

한국, 작자 미상, 17세기, 20.5×31.5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목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동람도』와 유사하다. 강원도의 각 군현과 고을의 진산(鎭山), 그리고 하계망(河系網)이 그려져 있다. 고을의 이름 옆에는 동도·서도의 구분, 고을의 품계와 이칭(異稱) 등이 표시되어 있다.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다.

감영이 있던 원주는 붉은색 사각형으로 강조했다. 지도 상단에는 관내의 찰방역(察訪驛), 첨사진(僉使鎭), 만호진(萬戶鎭) 등을 기재하고 동해는 파도 무늬를 사용하여 묘사했다. 울진 근처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동람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어 조선 전기의 울릉도, 독도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 江原道」『조선지도 朝鮮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중반, 37.2×40.5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목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 지도와 유사하다. 울릉도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는데, 울릉도는 평해의 동쪽, 우산도는 삼척의 동쪽에 있고 육지에서 6일 걸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에는 울릉도가 북쪽, 우산도가 남쪽에 그려져 있어 하단의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도 江原道圖」『접역지도 寓域地圖』「강원도도」『접역지도』

한국, 작자 미상, 19세기 중반, 38×29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조선국지도」, 「한양경성도」, 「경성부근지도」, 도별도를 합쳐 총 11장으로 구성된 인쇄본 지도책의 강원도 지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에 부속 도서로 표현되어 있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지도 江原道地圖」『좌해지도 左海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22년, 58.7cm×91.4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강원도지도」
『좌해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에 속하는 사본으로 팔도분도 중에서 강원도 부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북쪽에 글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에는 죽전(竹田)과 주토굴(朱土窟)이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 옆에는 “울진에서 바람이 좋으면 2일이면 도착한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북쪽의 간성(杆城) 옆에 죽도(竹島)가 그려져 있으나 울릉도, 독도와는 무관한 섬이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강원도지도 江原道地圖」『팔도지도 八道地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58.2×99.2cm,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의 사본인 『팔도지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지도의 하단에는 강원도의 인구, 토지, 군사 등의 자료와 각 고을의 인구, 창고, 소속 면(面)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동해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동국지도』 사본과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다. 이는 지도 여백 때문에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를 북쪽으로 배치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등의 표시가 보인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1991) 〈오상학〉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개정판

일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833년, 86×132cm, 개인 소장

일본의 저명한 지도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78년 제작한 일본 최초로 경위선이 표시된 정교한 일본 전도인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의 후속 판본이다. 1779년에는 목판본 개정판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가 출판되었고, 1791년 재판, 1811년 3판, 1833년 4판, 1840년 5판, 그리고 병가기문(兵家紀聞) 판이 관의 허가 없이 1846년에 나왔다. 이 지도는 제4판으로 아와국(阿波國) 유학자 사누키 시바 구니히코(岐柴邦彦)의 서문이 실려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 나오는 지도는 1846년 해적판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과 동일한 채색이 되어 있는 점이 원본과 다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가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이름인 다케시마(竹島)로, 독도가 마쓰시마(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두 섬 옆에 ‘일운기죽도[一云磯竹島: 기죽도는 울릉도]’,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이는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보이는 내용으로,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이즈모(出雲)]에서 인슈[隱州: 오키(隱岐)]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즉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일본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경위선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없다는 점, 조선의 영토와 함께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도 일본이 두 섬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黒田日出男,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東京大學出版會, 2001); 『新刻 日本輿地路程全圖 折一枚 長久保玄珠 天保四年江戸須原屋茂兵衛等 (四版) 』(1833) <양보경>

관련 항목 인슈시청합기

「개정신전 조선전도 改正新鐫朝鮮全圖」

일본, 야마다 고노스케(山田孝之助), 1882년, 48×32cm, 영남대 박물관 소장

조선 전기형 지도를 저본으로 경위도를 가미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도로와 해상 선로도 표시하였으며, 지도표를 이용하여 부, 목, 군현의 각 지방 군현의 등급도 표시했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지명은 적지 않았다.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2007)

〈이상태〉

「개정신전 조선전도 改正新鑄朝鮮全圖」

일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875년, 50×45cm, 서울대 도서관 소장

사다 하쿠보가 일본의 국정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명령으로 조선과의 국교 재개와 ‘정한(征韓)’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1870년에 부산에 파견되었다가 귀국 후 작성한 지도이다. 사다 하쿠보 등 외무성 고위 관리들은 귀국 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이 문서의 제목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전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도가 조선의 부속 도서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보고서에서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잘 기재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기재가 미흡하다고 했다. 사다가 작성한 『개정신전 조선전도』에도 독도(마쓰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고 대신 울릉도 남쪽에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다.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듯하나 지도상의 위치로 볼 때 사다가 우산도를 마쓰시마(독도)로 보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다가 우산도와 독도가 동일한 섬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여 그린 것은 확실하다. <호사가 유지>

관련 항목 사다 하쿠보

검찰사 檢察使

『증보 문헌비고』에 보면, 검찰사는 도검찰사와 더불어 권설직(權設職) 가운데 뚜렷한 행적을 남긴 직책으로 되어 있다. 권설직이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시로 만들었다가 소기의 업무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직책이다. 검찰사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권설직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사라는 직명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임진왜란 중이었으며, 그 밖에 이 직책을 맡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말의 이규원(李奎遠)이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된 것은 1881년 5월 23일이었다. 울릉도를 수토하던 관원이 일본인들이 울릉도 목재를 불법으로 벌채하여 원산과 부산으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는 한편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 5월 10일까지 섬을 조사하고 5월 27일 귀경하였다. 그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고종이 울릉도 개척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되던 울릉도민의 쇄환 정책이 폐지되고, 울릉도가 개척되어 유인도로 되었다. 검찰사 제도는 갑오경장으로 없어졌다.

『증보 문헌비고』 직관고 14, 권설직 조 <임영정>

관련 항목 울릉도 개척령; 이규원

경계 확정 delimitation

육상 경계 또는 해양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일 가운데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경계 확정이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을 긋는 작업을 획선(demarcation)이라고 한다. 경계 확정은 육상 경계든 해양 경계든 관계국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를 위해 국제법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육상 경계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는 산에서는 분수령 또는 골짜기, 평지에서는 큰 나무나 돌 등 눈에 띄는 목표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츠와나와 나미비아 간의 카시킬라·세두두섬 사건에 대한 1999년 12월 13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국경 하천의 경계선에 대해 강의 중간선, 가항수로(可航水路)가 있는 경우에는 가항수로의 중간선(thalweg)이 국제법상의 경계선이라고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경계선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는 영해의 경우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의 경우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영해의 경계 확정에 관하여 동 협약 제15조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벗어나는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역사적 권원(權原)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이외의 방법으로 해양경계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1969년 2월 20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중간선도 하나의 등거리선”이라고 했다. 양자는 동일한 발상의 결과물이지만 대향(對向) 관계에서는 중간선으로, 인접 관계에서는 등거리선으로 표현한다.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가 똑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영해의 경계 확정에 대한 기준을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준은 이미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륙붕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관계국 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고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그 경계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제6조). 하지만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약정적인(conventional) 것일 뿐 국제관습법의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한편, 사건의 일방 당사국인 서독(당시)이 협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서 “경계 확정은 형평 원칙에 따라 관련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에게 해중(海中) 및 해저(海底)에로의 그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의 모든 부분을 다른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침범함이 없이 가능한 한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해 행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 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EEZ의 경계 확정 방식을 둘러싸고 등거리선 지지국과 형평 원칙 지지국 사이에 예각적 대립이 있었다. 그 결과 양자 간의 타협으로 나타난 것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EEZ 경계 확정)와 제83조(대륙붕 경계 확정)이다. 동문(同文) 형식을 지닌 이 두 조문은 “경계 확정은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規程)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에 의거하여 합의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등거리선’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형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 해양경계확정이 ‘형평한 해결’, 다시 말해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거리선 방식이 완전히 퇴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방식이 빙탄불용(氷炭不容)의 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등거리-중간선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양경계확정에 대해

현재는 우선 등거리-중간선을 긋고, 이후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 ‘이동’ 또는 ‘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2년 10월 10일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의 영토 및 해양 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이에 대하여 “먼저 등거리선을 긋고, 다음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그 선을 조정 또는 이동시켜야 할 요인이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이 오늘날의 해양경계획정 방법”이라고 했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김찬규>

관련 항목 기선; 등거리선; 유엔해양법협약; 중간선; 중간수역